

의안번호	2200070
의 퇴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4.6.4.
추 계 번호	23B0351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최저임금액)제2항	<삭 제> －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음.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최저임금액)제2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최저임금법」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%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¹⁾
- 개정안은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습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

1) 제5조(최저임금액)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.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중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수와 이들의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음
- 또한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습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증가할 경우 이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그러나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노사 합의 결과·경제성장률·해당 사업체의 경영실적·근로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며, 이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은 장래에 발생할 혼인율·출산율·재해율 등 행태 변화에 의해 결정됨
 - 따라서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